

2026. 9.

2026년 김제시 의정비심의회위원회 개최 결과

2026년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 심 의 개 요

- (일 시) 2026. 9. 22.(화) 14:00
- (장 소)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 ※ 1명 불참
- (주요내용)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제10대 김제시의회의 의원 2027 ~ 2030년 의정비 결정

2 심 의 결 과

- [1. 위원장 선출] 안재용 위원
- [2. 회의 공개 여부] 비공개
- [3.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 연 18,000,000원
- [4. 월정수당]
 - 1년차('27년) :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만큼 인상
➡ 월 2,536,490원 / 연 30,437,880원
 - 2~4년차('28~'30년) :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5. 주민 의견수렴 여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생략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의 정 활동비	▶ 연 18,000,000원 / 월 1,500,000원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월 정 수 당	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만큼 합산한 금액 ▶ 연 30,437,880원 월 2,536,490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

▶ 2027년도 의정비 : 월 4,036,490원 / 연 48,437,880원

붙임 1**의정비심의회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1	위 원 장	안 재 용	김 제 시 출 입 기 자 단 간 사	
2	위 원	유 미 라	김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3	위 원	이 완 근	전북지방법무사회 김제지부장	
4	위 원	최 기 영	김 제 시 새 마 을 회 회 장	
5	위 원	강 미 숙	대한적십자김제시협의회 고문	
6	위 원	이 찬 호	김제시 해병대전우회 회장	
7	위 원	박 승 훈	김제시 자율방범연합대 대장	
8	위 원	김 용 문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9	위 원	서 백 현	전 김 제 시 의 회 의 원	불참
10	위 원	서 영 빈	전 김 제 시 의 회 의 원	

붙임 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9. 22.(화) 14:00	장 소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
참 석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불참 1명)		
안 건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 2027~2030년 의정비 결정 1) 의정비심의회 공개 여부 결정의 건 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3)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건 4)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방식 결정의 건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의회법무 팀장	<<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시장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생략 >>		
의회법무 팀장	- 다음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서영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 원	- 언론계 대표인 안재용 위원님께서 김제시 출입기자단 간사를 맡고 계시므로 위원장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원	- 서영빈 위원님께서 고사하시고 안재용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데에 본인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의회법무 팀장	- 그럼 더 이상 추천이 없는 관계로 안재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의회법무 팀장	-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용 위원님께서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선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안재용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직으로 자리를 옮겨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김제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재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의회법무 팀장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포된 선서문 아래쪽에 자필 서명 후, 퇴실하실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안재용입니다. 2024년 의정비 심의 때도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밖에 나가서 위원장 맡았다고 하면 왜 의원들 의정비 올려주냐고 질타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안 하겠지 했는데 ○○○ 위원님 등 여러분이 추천해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간사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법무 팀장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정비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1차 심의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정비심의회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건,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방식 결정의 건 총 4건 입니다. 먼저, 의정비심의회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의거, 심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로 진행될 경우, 방청인의 참관이 가능하나 별도의 발언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방청인 참관 없이 자체적 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인, 6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한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므로 비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서만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출석위원 9명 중 7명이 비공개에 찬성 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에 앞서 의정비 구성 및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의회법무 팀장	-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역할과 의정비의 구성 그리고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35조까지의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시의회, 언론, 법조, 교육, 시민 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분야별 추천을 받았고,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총 10명의 위원으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의결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안건이 의결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 등 세 가지로 구성되며, 지급 산정 기준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범위에서 우리 시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의정비심의회 결정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정 시한 및 향후 절차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금액은 김제시장과 김제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시장은 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이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정활동비,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도별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명시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비심의 위원회 및 의정비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관련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의회법무 팀장	-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지급범위 내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위원의 경우 최대 월 150만원, 연 1,8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현재 김제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모두 동일하게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2030년까지 그대로 가는건지?
의회법무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 원	- 현재 150만원인데, 4년 후면 단가가 조금 낮은 건 아닌지?
의회법무 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최대 금액인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을 지자체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실 금액은 이 금액 내에서 인상이 아닌 동결 또는 삭감입니다.
○○○ 위 원	- 인상은 못 해주더라도 동결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의견없음 >>.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 연 1,800백만원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150만원, 연 1,800백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 번째 안건인,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관련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의회법무팀장	-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자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1년차인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인 2,450,720원을 기준으로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나,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년차인 2028년부터 4년차인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만큼 인상 등 구체적이 금액이 나오도록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은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월정수당인 2,450,720원을 기준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증액한다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만큼 할 것인지, 3.5% 미만 또는 초과로 할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만큼 인상할 경우 2027년도 월정수당은 월 2,536,490원, 연 30,437,880원으로 월 85,770원, 연 1,029,24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인데, 3.5%를 초과하게 되면 여기서 회의가 끝나는게 아니고 주민 공청회를 해야되며, 3.5% 이내에서 인상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3.5% 초과하면 주민의견수렴 해야되는데,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미만으로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3.5% 미만이 아닌 3%, 3.3% 등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 위 원	-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 원	- 다른 의견은 없구요, 제가 볼 때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인상해서 주민 의견수렴 하는 것도 그렇고, 김제시민분들도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어차피 물가상승률에 따라 하는 것이니 그정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만큼 인상한 월 2,536,490원, 연 30,437,880원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은 월 2,536,490원, 연 30,437,88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동결할 것인지, 매년 인상할 것인지, 격년으로 인상할 것인지, 또 인상한다면,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할 것인지, 인상률의 1/2 만큼 할 것인지 등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법무팀장님께서 조금 설명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팀장	- 1년차인 2027년도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좀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월정수당을 2028년도 기준 금액으로 삼아서 2028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7년도 보수인상률이 3.5%이면 2027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할 것인지 아니면 1/2 만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격년으로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위 원	- 보수인상률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 위 원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네 번째 안건인,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의거,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하고 나머지 의견수렴 방식 결정의 건은 폐기함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사께서는 금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팀장	- 금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포할 계획이며, 김제시의회에서는 통보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의정비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금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 이상으로 김제시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소중한 발걸음 해주시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재적위원 : 10명(위원장 1, 위원 9) ※ 참석위원 :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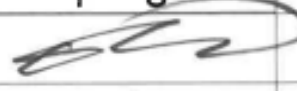
□ 의결사항 :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 2027 ~ 2030년 의정비 결정

□ 의결결과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의 정 활동비	▶ 연 18,000,000원 / 월 1,500,000원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월 정 수 당	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만큼 합산한 금액 ▶ 연 30,437,880원 월 2,536,490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2027 ~ 2030년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위와 같이 의결함.

2026. 9. 22.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1	위 원 장	이재동		
2	위 원	강미숙	강미숙	
3	위 원	김영민	김영민	
4	위 원	박승훈	박승훈	
5	위 원	서영빈	서영빈	
6	위 원	유미라	유미라	
7	위 원	이원준	이원준	
8	위 원	이찬호		
9	위 원	최기영		
10	위 원			